



도민이 중심
신뢰받는 의회

제4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5. 4. 22.(화) 10:00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 급식시설 근무환경
구성 및 지원 조례안

교 육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박진희 의원 등 7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2025년 4월 11일

○ 회부일자: 2025년 4월 14일

3. 제안이유

-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학교가 운영하는 급식시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학교급식관계자의 처우 개선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관계자가 양질의 급식 제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가. 조례 목적 및 정의에서 학교와 학교급식관계자에 대해 정의하고 그 밖에 용어는 「학교급식법」을 따르는 것으로 규정함(안 제1조~제2조)
- 나. 교육감의 책무에 안전한 급식시설 조성 및 학교급식관계자의 건강권 보장과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3조~제4조)
- 다. 급식시설 환경 개선·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급식시설 환경 개선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제6조)

라. 학교급식관계자들의 건강 관리를 위한 조리장 환기설비 개선과 인력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제8조)

마. 교육지원청 관내 급식시설 현안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급식시설 개선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바. 학교급식관계자 폐암검진 지원 및 휴게시설, 휴게시간을 규정함(안 제10조~제11조)

사. 교육·연수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제14조)

5. 검토의견

가. 조례 제안이유 검토

- 학교 급식조리장은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온·고습·유해가스 등의 증기와 열기로 근무환경이 좋지 않고 미끄럼·화재·감전 사고 빈도가 높아 급식관계자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어 이에 대한 급식시설 환경 개선과 각종 사고 예방 대책 강구 필요성이 교육계에서 지속적으로 논의 되어 왔음
- 교육부에서도 지난 2023년 「학교급식실 조리환경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환기설비, 조리방법 개선, 학교 급식관계자 폐암 예방 관계기관 전담팀 운영 등 급식관계자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학교 급식종사자 중 폐암 확진자 수는 총 40명이며, 최근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는 급식관계자들의 폐암 등 직업병 발생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교육부가 2023년 발표한 학교 급식관계자 폐암 검진결과를 보면

- 전국 14개 교육청 55세 이상 또는 경력 10년 이상 학교 급식종사자 2만 4천 65명을 조사한 결과 ‘폐암 의심’ 94명(0.39%), ‘매우 의심’은 45명(0.19%), 폐암 의심 소견이 139명(0.58%)로 나타났다
- 또한, 보건복지부의 암 등록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 급식 종사자 폐암 유병률은 인구 10만 명당 135.1명으로 45~64세 여성인구의 유병률(122.3명)보다 1.1배 (10.5.%) 높음¹⁾. 특히 학교 급식관계자의 경우 여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임
 -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는 급식관계자들의 산업재해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5년간 총 6,446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하였²⁾으며, 2020년 729건, 2021년 1,202건, 2022년 1,475건, 2023년 1,794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타 직종에 비해 급식실에서의 산업재해가 가장 많음. 충북도 급식실 산업재해가 전체의 61%를 차지함(붙임 1 참조)
 - 더불어, 학교 급식실은 한정된 인원으로 운영되어,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일을 그만두는 사례가 많고 대체인력을 구하기도 어려운 형편임. 급식관계자들은 연가, 병가 등 법정 휴가 사용 권리가 명시되어 있으나 휴가 사용 시 ‘급식 중단’이라는 민감한 업무 특성상 연가나 병가조차 자유롭게 사용하기 어려운 현실이며, 개인 사정이나 건강 문제에도 불구하고 휴가 사용을 포기하거나 연차를 방치하는 사례도 많음
 - 이런 구조 속에서 휴가·병가 사용 기피, 누적된 과로로 건강 악화 근골격계 질환, 호흡기 질환 등 직업병 발생 위험이 증가. 이에 휴식권 보장과 대체인력 운영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급식관계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하도록 개선이 필요함

1) 2023. 3. 14. 중앙일보. 학교급식 종사자 28% “폐 이상소견”..교육부 개선대책 내놔다.

2) 2024. 10. 1. 세계일보, 학교급식 조리종사자 산재 5년간 6446건,..대책필요.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제도만으로는 학교 급식실의 근무환경 실태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어 본 조례는 학교 급식실의 근무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고 급식관계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급식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본 조례안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학교 급식시설 근무환경 조성 및 개선, 급식관계자 건강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제도 마련이라 생각되며, 학생 건강과 직결된 급식을 제공하는 급식관계자들의 근무환경과 지원에 관한 조례로 근무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학교 급식 질 향상과 급식 만족도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 생각되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나. 타 시·도 급식시설 환경 개선 및 급식관계자 건강 관련 조례 검토

- 타 시·도 교육청에서 안전한 급식시설 근무환경 개선과 지원 조례 및 급식종사자 건강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17개 시도교육청 중 11곳임
 - 전국적으로 급식실이 건강상 열악한 일터로 지목되면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급식시설 환경 개선·지원, 조리실 공기질 관리, 소방시설 설치, 급식종사자 배치 및 처우 등을 9개 시도에서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전남교육청은 급식관계자들의 근무환경 개선 조례와 폐암검진 지원 조례를 각각 제정하였음

시도명	조례명	제정 · 개정 일자
부산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급식시설 환경 개선 및 지원조례	2025.1.1. 제정
충남	충청남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4.12.30.제정
인천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 급식시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2024.12.30.제정

제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2024.12.27.제정
세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안전한 학교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2024.12.6.제정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2024.7.18.제정
강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2024.7.5. 제정
전남	전라남도교육청 학교급식 관계자 근무환경 개선 지원 조례	2024.7.4.제정
경기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2024.5.16. 제정
전남	전라남도교육청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	2023.9.21.제정
전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	2024.2.16.개정

다. 주요내용 검토

- 안 제1조(목적)부터 제2조(정의)까지는 조례 제정 목적이 학교급식 관계자의 근무 환경 개선으로 양질의 급식 제공에 있음을 명확히 하였고, 학교, 급식시설, 학교급식관계자의 정의를 규정함
- 안 제3조(교육감 책무)부터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까지는 교육감의 책무로 학교급식관계자의 건강권 보장과 근무여건 개선 시책을 매년 시행하는 것과 그에 따른 행정·재정 지원을 교육감으로 책무로 규정함
- 안 제5조(기본계획 수립)부터 제6조(급식시설 근무환경 개선 등) 급식 기본계획에 급식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 개선 사항, 안전교육, 건강관리 지원 등을 포함하여 세우도록 하였으며, 급식시설을 개선할 때 학교급식관계자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하도록 한 점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2025년 계획 불입 2참조)을 정기적으로 수립토록 한 점은 정책의 지속성 확보 측면에서 효과적이다 사료됨
- 안 제7조(조리장 환기설비 개선)부터 제9조(급식시설개선협의회)까지는 조리장 환기설비 개선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연계하여 근거를 마련한 것이며, 급식실이 한정된 인원 운영으로 연가, 병가 등 사용이 어려웠으나 대체인력 확보 등 인력 운영 방안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각 학교단위 급식시설개선협의회 구성은 실제 현장 중심의 개선안을 도출하는데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됨

- 안 제10조(학교급식관계자 폐암검진 지원 등)부터 제11조(휴게시설 및 휴게시간)까지는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는 급식관계자들의 폐 이상소견과 산업재해가 늘어나고 있고‘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예방 관계기관 TF 회의’(제6차, 2025.3.13.)에서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예방 검진 공통기준안^(붙임3 참조)이 마련되어 그 기준안을 표준하여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실효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휴게시설 및 휴게시간은 상위법¹⁾에 따른 것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됨
- 다만, 폐암검진은 직원의 후생복지에 대한 사항이므로 교육감의 전속 권한에 대한 정책 방향 또는 교육감이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건강관리 규정을 조례가 아닌 규칙 등으로 교육감이 따로 정하도록 제시하는 검토의견도 있었음
- 안 제12조(실태조사 등)부터 제14조(협의체 구성)까지는 종합적인 급식시설 환경 개선 및 지원 방안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항으로 필요성과 당위성이 인정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그간 우리사회 및 교육계에서 지속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논의되어 온 학교 급식시설 근무환경 개선 및 급식관계자들의 건강 지원을 위한 조례로 종합적인 정책 지원을 통하여 학교 급식시설 조성, 개선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추진과 급식관계자들의 건강 지원을 위해 그 입법 취지와 제정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조례 제정안의 조문 체계와 주요 내용이 법령에 위배 되는 사항이

1)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및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없고, 「법령 입안 및 심사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집행부 담당 부서와의 협의, 조례안 예고 등의 입법 절차를
준수하여 입법 체계나 형식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
으로 사료됨

- 다만, 제10조 폐암 검진 모니터링 실시 방법과 모니터링 결과 판
정의 전문성,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의사) 협력이 중요하여
업무 추진 시 이에 대한 세밀하고 꼼꼼한 고민이 필요함

붙임 1

< 충북교육청 최근 3년간(2022~2024년) 교육공무직 산재발생 현황 >

재해 유형	급식실	체육 활동(수업) 중	이동 중	수업 (준) 중	시설 관리 중	청소 중	체험 활동 중	출근 (통학) 중	출장 중	사무 업무 중	대외 훈련 중	계	비고 (%)
넘어짐	26	3	19	1	2	2	0	2	1	0	0	56	32.00
떨어짐	1	1	0	0	1	0	0	0	0	0	0	3	1.71
부딪힘	6	0	0	1	0	0	0	0	0	1	0	8	4.57
물체에 맞음	2	0	0	1	0	0	0	0	0	0	0	3	1.71
끼임	6	0	0	0	0	0	1	0	0	0	0	7	4.00
절단배암끼임	4	0	0	1	1	0	0	0	0	1	0	7	4.00
이상온도접촉	36	0	1	0	0	0	0	0	0	0	0	37	21.14
무리한 동작	6	1	1	1	0	1	0	0	0	0	0	10	5.71
근골격계질환	17	0	0	0	0	0	0	0	0	0	0	17	9.71
폭력행위	0	0	0	0	1	0	0	0	0	0	0	1	0.57
교통사고	0	0	0	0	0	0	0	13	0	0	0	13	7.43
화학물질접촉	1	0	0	0	0	0	0	0	0	0	0	1	0.57
도전적행동	0	0	0	5	0	0	0	1	0	0	0	6	3.44
업무상 질병	1	0	0	0	0	0	0	0	0	0	0	1	0.57
기타	1	0	2	1	0	0	0	1	0	0	0	5	2.87
합계	107	5	23	11	5	3	1	17	1	2	0	175	100
비율(%)	61.14	2.86	13.14	6.29	2.86	1.71	0.57	9.72	0.57	1.14	0.00	100	

〈 충북교육청 급식시설 환경 개선 및 급식관계자 지원 계획 〉

1. 조리흡 저감 충청북도교육청 사업계획

가. 환기시설 개선 추진 계획

개선대상	구분	개선 완료	향후 계획					
			`25년		`26년		`27년~	소계
			본예산	1추	본예산	1추		
434	환기 단독	138	57	63	21	41		182
	타사업병행	45	25		24		20	69
	계	183	82	63	45	41	20*	251
			145		86		20	251

* 타공사와 병행 및 통폐합 등의 사유로 2026년까지 환기시설개선이 불가능한 학교는 조리장내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한 기구(전기식 기구, 작업노동력 절감기구, 조리장 공기청정기 등)를 우선지원 예정

나. 전기식 기구 및 작업노동력 절감기구 지원 확대

- 조리과정 중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 저감 기구 보급
 - 가스식 기구 → 전기식 기구로 교체·지원 확대(2021년부터 추진)
 - 노후 가스 기구 교체 시 전기식으로 지원, 23.7% 추진 중
 - 학교 조리교 다기능 오븐기 보급(98.9%) 완료
 - 미보유 5교(소규모 급식인원 및 장소 협소로 미신청)
- 급식종사자 노동강도 완화 및 조리흡 흡입 저감을 위한 자동 교반기, 컵 자동세척기 등 자동화 급식기구 지원 확대(2019년부터 추진)

다. 향후 학교급식실 배기·환기 개선계획

(단위: 교)

구분	청주	충주	제천	음성	진천	단양	괴산 증평	보은	옥천	영동
2025년	54	15	13	6	10	3	8	3	5	3
2026년	34	13	2	8	3	완료	2	완료	완료	완료

- ※ 교육청 예산수립 기준 작성 계획이며, 공사기간은 학교별 상이
- ※ 환기시설 단독 개선은 2026학년까지 완료 예정이며, 타사업 병행 공사 예정 학교, 분교장 개편 및 통폐합 대상교 등 20교는 사업시기에 맞춰 개선 예정임

붙임 3

< 교육부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예방 건강검진 공통기준(안) >

【 건강검진 공통기준에 따른 검진 절차】

※ 검진 절차(안): 건강상태 모니터링 → 1차 검진(저선량 흉부 CT) → 2차 추가(정밀) 검진

① 폐암 의심 관찰자
② 1차 검진 희망자

‘폐암 의심’ 이상

* 상세 판정 기준 이상소견 없음< 양성 결절< 경계성 결절< 폐암 의심< 폐암 매우 의심

① 건강상태 모니터링

- 급식종사자들의 건강상태 확인을 통해 폐암을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건강상태 모니터링*** 추진

* 모니터링의 예시로서 ①일반건강검진 시 문진 포함, ②병원과 협약하여 일괄 문진, ③자가 문진 후 1차 검진 희망 ④학교장 면담 등 교육청 여건에 맞는 방안을 마련하여 자체적으로 추진 (문진 실시 시 고용부 예시<별첨> 참조)

※ **모니터링 필요성:** 전문가 소견에 따르면 모든 급식종사자에 대해 1차 저선량 폐CT 촬영 시 **방사능 노출 위험**이 있기에 모니터링부터 우선 실시, **의심 증상 관찰자 또는 희망자에 한해 1차 검진**

② 1차 검진(저선량 폐CT)

- 모니터링 결과 **폐암 의심 증상 관찰자* 또는 희망자**에 대하여 **1차 검진 실시**

* 체중감소, 기침, 객혈, 갑작스러운 호흡곤란 등 폐암 의심 증상 관찰자

③ 2차 검진

- 1차 검진 결과, **‘폐암 의심’ 이상일 경우 2차 검진 실시**(고용부 권고공문, '24.9.)

* 「암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86호) [별표2] 암검진 결과 판정기준

④ 1, 2차 검진에 따른 비용지원

- 비용지원 범위는 **교육청별 예산 상황에 따라 자체 기준을 정하여 결정**

⑤ 1, 2차 검진에 따른 복무 처리

- **공가*처리** (각 **교육청별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명시하여 운용 필요)

* 1차 검진의 경우 일반건강검진, 특수건강검진 등 타 건강검진 시 함께 검진 권장

○ 동 건강검진 공통기준(안)은 각 시도교육청의 예산상황 및 근로자 의견청취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변경 가능